

「평창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1월 20일, 김성기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4년 11월 25일 회부
- 상정일자: 제3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4년 12월 5일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성기 의원)

가. 제안이유

- 농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군수 및 군민의 책무(안 제3조~제4조)
- 다. 지원(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평창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첨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안자 : 김성기 의원
- 제안일자 : 2024. 11. 20.
- 회부일자 : 2024. 11. 25.
- 상정일자 : 2024. 12. 5.

2. 제안이유

- 농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군수 및 군민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 지원(안 제7조)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였고,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법 제4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히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 「친환경농어업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농어업자재의 투기(投棄)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음.

나. 입법의 취지

- 농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2조(정의)에서 “영농폐기물” 및 “영농폐기물 수거자” 등 주요 용어에 대하여 명확화하였음.

- 안 제6조(실태조사)에서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및 수거 현황, 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7조(지원)에서는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수거 및 집하 · 선별시설 설치, 수거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물품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5. 종합검토의견

- 농업활동 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수거비 및 소모성 재료 등을 군에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인정되고 자치사무에 관하여 규율하려는 것으로 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불임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로 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아.(생략)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히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3. 생활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91-18-01 영농폐기물(농약용기류)

91-18-02 영농폐기물(농촌폐비닐)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 가축분뇨, 폐농어업자재 및 폐수 등 농어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가축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폐농어업자재의 투기(投棄) 방지 및 폐수의 무단 방류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불임 타 지자체 조례 등 현황

□ 강릉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23.12.27.] 외 71건

(관내 7곳: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홍천군, 양양군, 횡성군, 강릉시, 화천군)

평창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성기 의원)

의안 번호	362
----------	-----

발의 연월일: 2024년 11월 20일

발의자: 김성기 의원

찬성자: 남진삼, 심현정, 이은미 의원

1. 제안이유

농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군수 및 군민의 책무(안 제3조~제4조)
- 다. 지원(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입법예고 : 2024. 11. 13. ~ 11. 20.(7일간/초일불산입), 의견 없음
- 라.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4. 10. 30. ~ 2024. 11. 7.(9일간), 아래 표 참조

조례안(의회안)	수정안	사유	의회 의견
제5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민(직계 존·비속을 포함) 본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경지에서--(이하 생략)--	제5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민 본인(직계 존·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경지에서--(이하 생략)--	군민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소유의 농경지를 적절히 표현하기 위해 문장 내 위치 변경	[수정안 전부 수용]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실태 조사를 위해 연구기관·법인 등에 의뢰 필요	
제7조(지원) ① (생략) 1. (생략) 2. <u>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 시설 설치 지원</u> 3. (생략) 4.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7조(지원) ① (생략) 2. (생략) 2. <u>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선별 시설 설치 지원</u> 3. (생략) 4. <u>삭제</u>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u>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u> 군수가 정한다.	군민의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에 관한 조례로 4항의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 내용은 삭제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품목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평창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영농폐기물”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농업활동으로 발생된 농촌폐비닐, 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다.
-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군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개인이나 군에 소재를 둔 마을회, 새마을운동단체, 농업인 단체 등(이하 “수거단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농업활동으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하고 성상별 지정된 장소에 분리 보관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민 본인(직계 존·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

는 임차한 농경지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과 수거단체가 해당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그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선별 시설 설치 지원
 3.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물품 지원
 4.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

를 준용한다. 다만,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군수가 정한다.

제8조(포상)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활동 우수 개인 및 단체에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로 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아.(생략)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 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6.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 폐지,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왕겨 및 쌀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4. 영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제7조(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
3.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물품 지원
4.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
5.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5년 ~ 2029년(5년간)
- 추계항목 : 수거장려금, 수거 및 집하·선별시설 설치, 소모성 재료물품(수거마대 등) 지원
 - * 수거장려금(폐비닐, 폐농약병),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는 기존 사업
 - * 소모성 재료물품(수거마대 등) 지원은 신규 사업

나. 추계 결과 : 6,410,000천원

- 붙임 <연도별 비용추계표> 참조

다. 재원조달 방안 : 군비 100%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도시안전국 환경과장 전 원 표
연락처	(033) 330 - 234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출	1,250,000	1,310,000	1,250,000	1,350,000	1,350,000	6,410,000
수거장려금	1,100,000	1,200,000	1,200,000	1,300,000	1,300,000	6,100,000
수거 및 집하·선별시설 설치	100,000	60,000				160,000
소모성 재료물품 지원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250,000	1,310,000	1,250,000	1,350,000	1,350,000
	지방세	1,250,000	1,310,000	1,250,000	1,350,000	1,35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